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신낙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1-83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1년 8월 13일

발 의 자: 신낙형, 송순효, 강선영, 윤유선,
김동협, 이충현, 송영섭, 김선경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훈예우수당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 개정내용

- 가.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자격요건(거주기간, 연령 기준)을 삭제하여
지급대상 확대(안 제9조의3제2항)
- 나.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나. 협조부서: 복지정책과

다. 입법예고: 2021. 8. 17. ~ 8. 22.

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계기행사시”를 “행사 시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3항 단서 중 “구비서류”를 “제출서류”로 한다.

제9조의3제2항 중 “3개월 이상 주민등록”을 “주민등록”으로, “만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9조의2①”를 “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제9조의2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계법령”을 “관계 법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)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보훈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</u>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,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</p> <p>4. ~ 6. (생략)</p> <p>제9조의2(사망위로금 지급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사망일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<u>구비서류</u> 중 「전자정부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6조(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행사 시</u> ----- -----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(사망위로금 지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---- <u>제출서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의3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보훈예우수당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<u>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제9조의2 ① 각 호에 해당하는 자</u>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③ <u>관계법령</u>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제9조의3(보훈예우수당의 지급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주민등록</u> ----- ----- <u>국가</u> <u>보훈대상자로서 제9조의2제1항</u> ----- -----.</p> <p>③ <u>관계 법령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
□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